

치과의사 윤리헌장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치과의사 윤리헌장 II.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의사의 의무 3. 환자로부터 얻은 정보의 비밀보장 치과의사는 환자의 이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되고, 개인의 유전정보 입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진료기관의 차원에서도 의료정보의 보안과 안전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단, 타인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환자정보의 보호를 공익에 양보할 수는 있다.	치과의사 윤리헌장 II.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의사의 의무 3. 환자로부터 얻은 정보의 비밀보장 치과의사는 환자의 이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되고, 개인의 유전정보 입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진료기관의 차원에서도 의료정보의 보안과 안전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단, 타인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환자정보의 보호를 공익에 양보할 수는 있다. <삭제>	- 공익적 목적과 별개로, 업무상비밀 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실에 맞추어 삭제함.

치과의사 윤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치과의사 윤리지침 2. 환자를 위한 성실한 정보 제공과 의견 존중 2.5.1. (과장·허위 광고 금지) 치과의사는 <u>잘못된 진료나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일반인 대상 매체(신문, 잡지, 광고전단지)등에 게재함으로써 환자를 유혹하거나, 자신과 병원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u>	치과의사 윤리지침 2. 환자를 위한 성실한 정보 제공과 의견 존중 2.5.1 (불법의료광고 금지) 치과의사는 <u>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및 명칭 표방 광고,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미심의 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 위한 국내광고, 소비자 오인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상장이나 감사장을 이용한 광고 등 불법의료광고를 해서는 안된다.</u>	-법령 및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3.1.2.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기록 금지) 치과의사는 문서에 의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장면을 녹음·촬영하거나, 그	3.1.2.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기록 금지) 치과의사는 <u>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u>	-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이 늘어남에 따라,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현실에

러한 행위를 지원 혹은 방조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녹음기록과 영상기록 등을 환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원 혹은 방조하여서도 안 된다.	<u>등 기본적인 신뢰관계 저해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u>, 문서에 의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장면을 녹음·촬영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원 혹은 방조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녹음기록과 영상기록 등을 환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원 혹은 방조하여서도 안 된다.	맞게 수정함.
10. 전문인 집단 내 협동과 자율규제 <u><신설></u>	10. 전문인 집단 내 협동과 자율규제 <u>10.5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u> <u>치과의사는 최저가 경쟁 등의 상업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송고한 치과 의료행위를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가격만을 내세운 저수가 경쟁이 결국, 과잉진료 및 치과의료서비스 질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신설함.